

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

● 지원내용

코로나19 관련하여 다음 ①~④ 중 하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**가족돌봄휴가 <무급>**를 사용한 경우

※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①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
코로나19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
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
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
-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
휴업·휴원·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, 격일(주) 등원·등교·통원, 분반제 운영
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(원)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※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가족돌봄휴가를 분할
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(예: '21년 3월 3일과 3월 14일 사용한 경우, 3월 3일 기준으로 판단)

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
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코로나19 관련 등교, 등
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
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
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● 지원수준

근로자 **1인당 10일 이내**로 지원

● 지원요건

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(대기업·공공기관도 지원)

● 지원금액

'21.1.1. 이후 사용한 휴가 1일 5만원(최대 50만원)

*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,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,000원 정액

● 신청기한

'21.4.5. ~ '21.12.10.

● 지원절차

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



근로자에게 지급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